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2년 6월호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

2. 한국거래소 규정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
나. 금리·통화·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
나. K-OTC시장 운영규정

다. K-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

라.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

마. 코넥스 주식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가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(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제재절차 마련)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(2022/5/3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그간 외부감사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함
 -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2022/5/3 개정 · 시행)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 -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된 자가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회계법인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
 -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계법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보고서 중 중요 사항의 별도 공시 의무 이행 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한정
 -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감사인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의 외부 공개업무 등의 위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 마련(제23조)
 -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절차를 마련하고 감사인 감리 착수 근거를 정비하며 품질관리 수준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설
-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 완화(제12조)
 - 지정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지정감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감사인 지정 취소 절차를 단축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□ 기타 외부감사제도 미비점 보완(제5조)

- 회계기준원 지원금 산정 근거 명확화, 감사인 지정 대상 여부 선정 기준 명확화, 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외부공개 대상에서 제외 등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2. 한국거래소 규정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심사기준 정비)

나. 금리·통화·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시장조성 의무이행 실적평가 기준에 5년 국채선물 및 금선물 관련 내용 추가)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2/5/27 개정 · 2022/5/30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심사기준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신규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기준 정비(별표 2의3)
 - 발행사가 가장 최근에 통보받은 LP평가 결과가 F등급인 LP를 추가하는 경우 향후 1년간 운용능력 평가시 감점
 - F등급 LP가 교체면제를 받은 경우 LP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부여 받은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상장신청종목의 LP 평가점수를 산출하고, 감점 대상에서 제외
- ETF, ETN 기초지수 산출기준 변경요건 완화(별표 2의3 및 별표 2의5)
 - 산출기준 변경을 위한 지수 간 상관계수 산출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상관계수 요건을 삭제
 - 산출기준 변경 전·후 기초지수들의 과거 5년간 상관계수가 0.8 이상일 것
 - 지수 방법론의 변경에 따른 기초지수 산출기준 변경을 발행사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변경시기 및 횟수 제한 요건을 삭제
 -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하고,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지수 산출기준 변경은 1회에 한할 것
- ETN 조기청산 요건 현실화(별표 2의5)
 - 조기청산 요건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는 실무적 케이스를 반영하여 단서조항을 신설
 -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청산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지표가치 급변시 가격제한폭 및 수급 불안정 등으로 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기정상화가 가능하므로 조기청산 사유에서 괴리율 요건을 삭제
 - 장종료시점 iV 기준 괴리율이 +100% 이상인 경우
- 지표가치의 기준시점과 청산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조기청산 시 상환가격을 과거의 지표가치에서 사유발생 일 이후(T+1일)의 지표가치로 변경

나. 금리 · 통화 ·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2022/5/31 개정 · 2022/6/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5년 국채선물 및 금선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조성상품으로 선정하고, 해당 상품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시장조성 의무이행 실적평가 기준에 5년 국채선물 및 금선물 관련 내용 추가(별표 4)
 - 5년 국채선물 및 금선물의 일중 의무이행률을 70%, 기간 의무이행률을 70%로 설정
 - 5년 국채선물 및 금선물 시장조성대가 지급방식을 ‘거래량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장조성상품에서 발생한 수수료 전액을 시장조성자들에게 모두 배분하는 방식(위안선물,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의 시장조성대가 산출방식)’으로 정함
 - 연계상품 관련 사항을 기존 상품들의 경우를 참고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함

〈금선물 및 5년 국채선물 연계상품 관련 사항〉

상품	연계상품 관련 사항	
5년 국채선물	연계상품	3년, 10년 국채선물
	연계상품 기본환급률	30%
	연계상품 자기매매수수료납부액 한도	3억원
금선물	연계상품	미국달러선물
	연계상품 기본환급률	30%
	연계상품 자기매매수수료납부액 한도	3억원

- 시장조성대가 및 연계상품대가 지급액 한도 설정시 기준이 되는 상품군에 5년 국채선물 및 금선물을 추가하고 각 상품군별로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일반투자자 대상 고지 및 확인의무 조항 신설)
- 나. K-OTC시장 운영규정 (위탁증거금 면제 허용 효력발생 기간 변경)
- 다. K-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중견기업 기준)
- 라.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(코넥스시장 상장주권 매수시 기본예탁금 납부 조항 삭제)
- 마. 코넥스 주식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(시장 참여가 가능한 일반투자자 요건 폐지 반영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2/5/12 개정 · 2022/5/30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 폐지 등 일반금융소비자의 진입요건 완화를 추진 중이나, 규제완화로 인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위험 노출 증대가 우려됨
 -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(2022. 1. 10. 발표)
 -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개정(2022. 4. 27. 개정, 2022. 5. 30. 시행)
 - (기본예탁금) 일반투자자가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일정금액 이상 예탁하도록 의무화
 - (소액투자전용계좌) 연 납입한도가 3천만원으로 제한되는 계좌로 기본예탁금 납입의무가 면제
- 이에 일반투자자가 코넥스시장에 진입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일반투자자 대상 고지 및 확인의무 조항 신설(제2-5조 제7항 제5호)
 - 금융투자회사는 코넥스시장에서 최초로 거래되는 일반투자자로부터 거래를 위탁받은 때에는 코넥스시장 제도 및 투자위험성을 고지하고 확인받도록 함
 - 다만, 전문투자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부 전문성이 인정되어 고지 실익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는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를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마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〈고지·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금융소비자〉

「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」 제74조 제1항 (2022. 5. 30. 시행)

1.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법률*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
* 부동산투자회사법, 선박투자회사법, 문화산업법, 산업발전법, 벤처투자법, 여신전문금융업법, 소재부품 장비산업법,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
2.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3. 벤처투자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
4.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엔젤투자자
5.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
6.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맞춤형 자산관리계좌(랩어카운트)를 통해 위탁하는 자
7.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
8. 벤처투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

나. K-OTC시장 운영규정 (2022/5/18 개정 · 2022/5/1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매매주문 수락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위탁증거금 면제를 허용하는 효력발생 기간을 변경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위탁증거금 면제 허용 효력발생 기간 변경(제26조, 부칙)
 - (기존) 2022년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짐
 - (개정) 협회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짐

다. K-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2022/5/19 개정 · 2022/5/20 시행)**1) 개정 이유**

- 소득세법 시행령(제157조의2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중견기업 기준(제9조의2, 부칙)
 - (기존)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
 - (개정)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
- 「K-OTC시장 운영규정」 부칙(2022. 2. 22.) 상 매매주문 수탁 증권사가 위탁증거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함
 -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, 협회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짐

라.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(2022/5/16 개정 · 2022/5/30 시행)**1) 개정 이유**

- 정부는 'KRX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'(2022. 1. 10.)을 발표하였으며, 그 일환으로 코넥스시장의 기본예탁금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 -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(2022. 5. 30. 시행)을 통하여 관련 내용 반영

2) 주요 내용

- 투자자가 코넥스시장 상장주권 매수 시 금융투자회사에 기본예탁금을 납부토록 하는 조항 삭제(제5조)
-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제12조 제1항 제2호 바목 신설)
 - 금투업규정 제4-36조 제1항 제3호 신설에 따른 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 추가
- 근거 법령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)에 대한 명칭 정비 및 자구 수정(제20조 제1항)

마. 코넥스 주식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(2022/5/13 개정 · 2022/5/30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코넥스 시장 기본예탁금 · 소액투자전용계좌 폐지 및 일반투자자에 대한 위험고지 · 확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
 - 「코넥스시장 업무규정」, 「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」,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 (2022. 5. 30. 시행) 반영

2) 주요 내용

- 시장 참여가 가능한 일반투자자 요건 폐지 반영
 - 기본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개설한 투자자에 한해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 삭제
- 위험고지 관련 투자자 확인 의무 반영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